

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0년도 제3회 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.

2020년 7월 24일
의정부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(단위: 명, 년)

임용예정직급	임용분야	임용인원	임용기간	주요 담당직무 내용	근무 예정부서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급 (주20시간)	노무사	1	2	- 공무원 및 공무원 단체교섭 추진 및 자문 -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근로관계 자문 및 지원 - 시 소속단체 노무관계 자문 등	총무과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 급 (주35시간)	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관리	1	2	- 장기요양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·점검 - 지도·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	노인 장애인과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 급 (주35시간)	도봉산 ~옥정선 보상업무	2	2	-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 관련 업무 - 보상 협의 업무(계약체결, 보상금 지급 포함) -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지원 업무 - 보상 관련 민원 업무(상당, 안내, 민원 처리) - 그 밖의 보상과 관련된 부대 업무(우편송달 등)	도시철도과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(주35시간)	전화교환	2	2	- 전화교환 업무 - 시 대표전화의 부서별 교환처리 - 전화번호 문의 안내 - 민원인 단순문의 처리	정보통신과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(주35시간)	감염병 관리	3	2	- 법정감염병 신고접수 - 법정감염병 통제 및 관리 - 접촉자 및 현장 관리 -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- 감염병 교육, 훈련, 홍보 등	보건관리과

※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, 근무성적, 성과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**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**될 수 있음

2. 관련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인사규칙(표준안)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예규 제98호, 2019.12.26.)
- 지방공무원보수규정

3. 응시자격요건

- **공통 응시자격요건**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▶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– 지역 및 성별 : 제한 없음(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)

– 임용분야별 응시연령

• 노무사: 20세 이상

•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관리, 도봉산~옥정선 보상업무, 전화교환, 감염병 관리: 18세 이상

○ 세 부 응시자격요건

※ 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

임용예정직급	임용분야	응시자격요건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급 (주20시간)	노무사	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 기업체 등에서 공인노무사로 근무한 경력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 급 (주35시간)	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관리	사회복지사 2급 이상 및 운전면허(1종 보통, 2종 보통)를 취득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: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

임용예정직급	임용분야	응시자격요건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 급 (주35시간)	도봉산 ~옥정선 보상업무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업무로 근무한 경력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(주35시간)	전화교환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.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: 관공서 및 민간분야 전화전문교환원 또는 콜센터 근무경력
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(주35시간)	감염병 관리	<u>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하고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.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: 「의료법」에 따른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경력

※ **실무경력 인정범위**: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**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**되어야 함.

※ **실무경력 기간**: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실 근무시간을 반영하여 산정함

4. 보수수준

임용분야 / 임용예정직급	연봉액	산출기초	비고
노무사 /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“ 나 ”급	25,292천 원	임기제공무원 6급(상당)의 기준연봉 하한액의 50%(근무시간 반영)	주20시간
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관리 /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“ 라 ”급	33,973천 원	임기제공무원 8급(상당)의 기준연봉 하한액의 87.5%(근무시간 반영)	주35시간
도봉산~옥정선 보상업무 /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“ 라 ”급	33,973천 원	임기제공무원 8급(상당)의 기준연봉 하한액의 87.5%(근무시간 반영)	주35시간
전화교환 /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“ 마 ”급	27,259천 원	임기제공무원 9급(상당)의 기준연봉 상한액의 65%의 87.5%(근무시간 반영)	주35시간
감염병 관리 /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“ 마 ”급	27,259천 원	임기제공무원 9급(상당)의 기준연봉 상한액의 65%의 87.5%(근무시간 반영)	주35시간

※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능력이나 자격·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

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공고기간: 2020.7.24.(금) ~ 2020.8.2.(일) [10일간]
- 접수기간: 2020.8.3.(월) ~ 2020.8.5.(수) [3일간, 09:00 ~ 18:00]
 - ※ 중식시간(12:00 ~ 13:00) 제외
- 접수장소: 의정부시청 총무과(인사팀)
- 접수방법: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, 우편접수 불가)
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○ 시험일정(안)

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	면접시험		최종합격자 발 표
	일 시	장 소	
2020.8.7.(금)	2020.8.12.(수)	시청 신관 소회의실	2020.8.14.(금)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.

■ 1차 시험(서류전형) : 시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※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

■ 2차 시험(면접시험) : 시 홈페이지 공고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※ 면접시험 심사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과정이 있으며, 응시자가 작성한 검증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면접 실시
 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의정부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

■ 최종합격자 발표 : 시 홈페이지 공고
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<제출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>

○ 응시원서 1통 <별지 제1호 서식>

- 응시수수료: 의정부시 수입증지 첨부(시민봉사과 경유)

· 노무사: 7,000원

·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관리, 도봉산~옥정선 보상업무, 전화교환,
감염병 관리: 5,000원

○ 이력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
○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
○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 <별지 제4호 서식>

※ **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(원본) 제출**(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)

※ 해당 경력분야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

-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,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**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담당업무가 채용 당해분야에 해당됨을 직접 확인**받아 제출 ⇒ 별지 제4호 서식 사용

※ **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명확히 기재**

※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(공증 필) 첨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 <별지 제5호 서식>

○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<별지 제6호 서식>

○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(본인 의견서) <별지 제7호 서식>

○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<별지 제8호 서식>

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원본) 1부

○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 ※ 해당자에 한함

○ 기타 자격증 등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1부(원본 지참)

○ 주민등록초본 1통 (**현재주소만**) 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
※ **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, 원본에 한하며**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여야 함

7. 기타(유의)사항

○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제규정을 적용합니다.

○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

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경력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, 신원조회(조사)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 중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(선발)할 수 있습니다.

※ 면접시험에서 평정점수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

-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), 채용예정 분야 중 한분야의 재공고 시 다른분야도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(연장)공고 할 수 있으며,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모든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전에 의정부시 홈페이지(<http://www.ui4u.go.kr>)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임용절차 관련 문의: 총무과 인사팀(☎ 031-828-2315)
 - 담당직무 관련 문의
 - 총무과 총무팀(☎ 031-828-2302)
 -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(☎ 031-828-4222)
 - 도시철도과 철도기획팀(☎ 031-828-4903)
 -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(☎ 031-828-2622)
 - 보건관리과 감염병관리팀(☎ 031-870-6272)